

모리타니 (Mauritania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사회보험 적용대상	임시 및 기간제 포함 봉급 근로자, 선원, 가사노동자, 훈련생, 견습생, 기술학교 학생, 특별제도 미가입 공공부문 근로자	임시 및 기간제 포함 봉급 근로자, 선원, 가사노동자, 훈련생, 견습생, 기술학교 학생, 특별제도 미가입 공공부문 근로자	-
사회보험 보험료 (근로자 / 자영자 / 사용자)	1% / 없음 / 8%	1% / 없음 / 8%	-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월 7,000 ouguiyas / 없음	월 7,000 ouguiyas / 없음	-
노령연금 수급요건	60세 이상 및 가입기간 20년 이상 (최종 10년 중 60개월 납부기간 포함)	60세 이상 및 가입기간 20년 이상 (최종 10년 중 60개월 납부기간 포함)	-
노령연금 지급률	최종 3년 또는 5년의 가입기간의 월평균소득 중 높은 값의 20% + 180개월을 매 12개월의 납입기간 마다 월평균소득의 1.33% 가산	최종 3년 또는 5년의 가입기간의 월평균소득 중 높은 값의 20% + 180개월을 매 12개월의 납입기간 마다 월평균소득의 1.33% 가산	-
일시금 (노령 청산금)	최종 3년 또는 5년의 가입기간의 월평균소득 중 높은 금액으로 1개월 치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	최종 3년 또는 5년의 가입기간의 월평균소득 중 높은 금액으로 1개월 치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65년(근로자연금보험)
- 현행법 : 1967년(사회보장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임시 및 기간제 포함 봉급 근로자, 선원, 가사노동자, 훈련생, 견습생, 기술학교 학생, 특별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공공부문 근로자

- 임의적용 :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무가입기간이 있는 자
- 적용제외 : 자영자
- 특별제도 : 공공부문 근로자, 국회의원 및 군인

4 재원조달

- 근로자
 - 사회보험 : 소득의 1%
 - 보험료 부과를 위한 월 하한소득 : 없음
 - 보험료 부과를 위한 월 상한소득 : 월 7,000 ouguiyas
- 자영자 : 해당 없음
- 사용자
 - 임금지급총액의 8%
 - 보험료 부과를 위한 월 하한소득 : 없음
 - 보험료 부과를 위한 월 상한소득 : 월 7,000 ouguiyas
 - 보험료는 분기납
- 정부 : 없음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 - 노령연금
 - 60세 이상(조로(早老)의 경우 55세)이며 가입기간 20년 이상(최종 10년 가입기간 중 60개월 납부기간 포함)
 - 적용대상 고용에 15일 이상 종사하였거나 또는 지역 월 최저임금 중 가장 높은 임금의 50% 이상의 봉급을 지급 받았을 경우 납부기간에 해당
 - 지역 월 최저임금 중 가장 높은 임금은 3,000 ouguiyas
 - 고용은 중단되어야 함
 - 상호협정에 의한 급여의 해외지급 가능
 - 노령청산금
 - 60세 이상(조로(早老)의 경우 55세)이며 납부기간 12개월 이상으로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
 - 적용대상 고용에 15일 이상 종사하였거나 또는 지역 월 최저임금 중 가장 높은 임금의

- 50% 이상의 봉급을 지급 받았을 경우 납부기간에 해당
- 지역 월 최저임금 중 가장 높은 임금은 3,000 ouguiyas
- 고용은 중단되어야 함

○ 장애연금

• 장애연금

- 정상퇴직연령보다 어리고 66.7% 이상의 소득활동능력 영구 상실로 판정되었으며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(장애 발생 전 최종 12개월 가입기간 중 6개월 이상 납부)
- 사고로 인한 장애의 경우 사고 당시 고용 중에 있었어야 함. 업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가 아닌 경우 기간요건 면제
- 적용대상 고용에 15일 이상 종사한 월 또는 지역 월 최저임금 중 가장 높은 임금의 50% 이상의 봉급을 지급 받았을 경우 납부기간에 해당
- 지역 월 최저임금 중 가장 높은 임금은 3,000 ouguiyas
- 상시간병수당 : 일상생활 활동을 위해 상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

○ 유족연금

• 유족연금

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 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또는 납부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경우
- 적용대상 고용에 15일 이상 종사하였거나 또는 지역 월 최저임금 중 가장 높은 임금의 50% 이상의 봉급을 지급 받았을 경우 납부기간에 해당
- 지역 월 최저임금 중 가장 높은 임금은 3,000 ouguiyas
- 수급권 있는 유족은 50세 이상 또는 장애를 가진 미망인, 장애를 가진 피부양 홀아비 및 14세 미만 고아(학생의 경우 21세 미만, 장애를 가진 경우 연령제한 없음)
- 배우자유족연금은 재혼 시 중단됨
- 재혼청산금 : 재혼 시 유족배우자에게 지급
- 유족청산금 : 사망자가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망인에게 지급

6

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• 노령연금

- 최종 3년 또는 5년의 가입기간의 월 평균소득 중 높은 값의 20% + 180개월을 초과하는 매 12개월의 납입기간마다 월 평균소득액의 1.33% 가산
- 급여산정을 위한 월 상한소득 : 월 7,000 ouguiyas
- 최저연금액 : 지역 월 최저임금 중 가장 높은 임금의 60%
- 지역 월 최저임금 중 가장 높은 임금은 3,000 ouguiyas
- 최고연금액 : 최종 3년 또는 5년의 가입기간의 월평균소득 중 높은 값의 80%
- 연금액은 국가사회보장기금의 재원에 따라 생계비 변동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조정

- 노령청산금
 - 최종 3년 또는 5년의 가입기간의 월 평균소득 중 높은 금액으로 1개월 치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 - 급여산정을 위한 월 상한소득 : 월 7,000 ouguiyas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
 - 최종 3년 또는 5년의 가입기간의 월 평균소득 중 높은 값의 20% + 180개월을 초과하는 매 12개월의 납입기간마다 월 평균소득액의 1.33% 가산
 - 정상퇴직연령 이전에 이뤄진 청구와 관련하여 매 1년마다 6개월의 가입 기간으로 크레딧 인정
 - 급여산정을 위한 월 상한소득 : 월 7,000 ouguiyas
 - 최저연금액 : 지역 월 최저임금 중 가장 높은 임금의 60%
 - 지역 월 최저임금 중 가장 높은 임금은 3,000 ouguiyas
 - 최고연금액 : 최종 3년 또는 5년의 가입기간의 월 평균소득 중 높은 값의 80%
 - 상시간병수당 : 장애연금의 50% 지급
 - 연금액은 국가사회보장기금의 재원에 따라 생계비 변동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조정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
 - 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발생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50% 지급. 2명 이상의 미망인이 있을 경우 균분 지급
 - 재혼청산금 : 배우자연금 6개월 치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유족배우자 재혼 시 지급
 - 고아연금 :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발생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25%를 각 고아에게 지급, 완전고아의 경우 40% 지급
 - 유족연금 합산 총액은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발생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 - 연금액은 국가사회보장기금의 재원에 따라 생계비 변동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조정
- 유족청산금
 - 가입기간 매 6개월 당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발생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 1개월 치를 일시금으로 지급
 - 미망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청산금은 균분 지급

7

관리운영기관

- 공공서비스, 노동 및 국가근대화부(Ministry of Civil Service, Labor, and Administration State Modernization)
 - 전반적 감독 제공
 - <http://www.fonctionpublique.gov.mr>

- 국가사회보장기금(National Social Security Fund)
 - 3자협의체에 의해 관리되며 제도를 운영하고 보험료를 징수함
 - <http://www.cnss.mr>

<2019년 ISSA 자료>